

|       |            |
|-------|------------|
| 의안번호  | 2219803    |
| 의 퇴 인 | 김태규의원      |
| 회 답 일 | 2026.9.18. |
| 추계번호  | 26D3366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하고 현 상임위원을 폐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0억 4,3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54억 2,600만원(연평균 30억 8,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연평균    |
|-------------------------|--------|--------|--------|--------|--------|---------|--------|
| 위원장 상임 변경<br>(안 제5조제2항) | 6,800  | 6,813  | 7,025  | 7,242  | 7,465  | 35,347  | 7,069  |
| 상임위원 폐지<br>(현행법 제6조 삭제) | △3,759 | △3,869 | △3,983 | △4,099 | △4,219 | △19,933 | △3,987 |
| 감사위원회 운영<br>(안 제12조의2)  | 2.4    | 2.4    | 2.4    | 2.4    | 2.4    | 12      | 2.4    |
| 합 계                     | 3,043  | 2,946  | 3,044  | 3,145  | 3,248  | 15,426  | 3,085  |

주 1. 상임위원 폐지는 재정지출 감소 요인으로 차감함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5조제1항,<br>안 제12조<br>(위원장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부총리의 보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차관급의 보수를 지급함 | 의무규정 |
| 2  | 안 제6조<br>(상임위원)                | -상임위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br>※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 의무규정 |
| 3  | 안 제12조의2<br>(감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의무규정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 1  | 안 제5조제1항,<br>안 제12조(위원장 등) | ○    | —                                      |
| 2  | 안 제6조<br>(상임위원)            | ○    | —<br>(현행 상임위원에게 지급되던 인건비를 추정하여 차감 추계함) |
| 3  | 안 제12조의2<br>(감사위원회)        | ○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위원장 인건비 등)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며, 각 위원장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전제함

-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총리의 보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
- 각 위원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상 부총리와 차관급의 연봉액을 준용하고,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추정함
- 추정된 보수액을 바탕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비상임 위원장에게 지급되던 경비 중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안전검토수당, 출무수당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전제함
  -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현행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이 아닌 위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비<sup>1)</sup>로, 위원장 상임 전환에 따라 해당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1) 현행법 제12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

예상되므로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하는 연간 금액을 추계기간 동안 차감함

- 안전검토수당 및 출무수당 또한 위원장 상임 전환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검토수당은 안전별로 10만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무수당은 위원회 출석 시마다 8만원~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출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하기가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는 해당 지출감소액은 고려하지 않음
- 직책수행경비는 위원장 상근으로 변경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 (위원장 비서실 인건비 등)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 각 위원장의 비서실 인력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표 2] 위원장 상임 전환에 따른 비서실 인력(안)

| 구분                     | 인력 규모(안)    |                                           |
|------------------------|-------------|-------------------------------------------|
|                        | 현행(비상임 위원장) | 개정안(상임 변경시)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급 1명       | 1급 1명<br>3급 1명<br>5급 2명<br>6급 1명<br>7급 1명 |
| 시·도선거관리위원회<br>(각 위원회별) | -           | 5급 1명<br>9급 1명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각 직급별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일반직 보수를 준용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추계 하며, 그 외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상임위원 폐지 관련)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 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폐지되는 경우, 위원회별 각 1명의 상임위원 이 감소하게 되므로, 현행 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재정소요 감 소액으로 보고 차감 추계함

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 현행법 제12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국무위원급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규정
  - 위 직급별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장관 및 1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여 추정하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감소액을 추정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폐지되어 비상임 위원수가 1명 증가할 때 월 215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추가재정소요로 보아 추계함
  - 2026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245만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1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sup>2)</sup>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할 때, 상임위원 폐지에 따라 해당 경비 지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차감 추계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현재 3명의 비서실 인력을 두고 있으므로(4급 1명, 6급 1명, 9급 1명), 상임위원 폐지에 따라 해당 인력도 감원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해당 인건비 지출 감소액을 추정함<sup>3)</sup>
    - 상임위원 비서실 인력의 직급별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각 직급의 보수를 준용하여 추정하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소요 감소액을 추정함
  - 인력 감원에 따른 기본경비 소요 감소액은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감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12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지급 증가분을 추가재정소요로 봄

2)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근거

3)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별도 지원 인력은 없음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이 중 6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며,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함<sup>4)</sup>
-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 수를 9명으로 하고, 그 중 8명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외부 민간위원 수를 8명으로 보아 민간위원 2명 증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
  - 회의 개최 횟수는 현행과 같이 연 4회로 하고, 회의참석수당은 회당 30만원<sup>5)</sup>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자산취득비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sup>6)</sup>을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로 함

4)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감사위원회의) ①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5)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 내에서 지급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6)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정부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2026.3. 기준)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 3.5    | 3.0    | 3.0    | 3.0    | 3.0    | 3.0    | 3.0    |
| 기관부담금(%)       | 13.067 | 13.129 | 13.193 | 13.285 | 13.379 | 13.475 | 13.559 |
| 자산취득비(천원)      | 4,980  | 5,078  | 5,180  | 5,283  | 5,389  | 5,497  | 5,60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등)

- (위원장 인건비 등) 현재 비상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원장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각 위원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의 부총리와 차관급 연봉액을 준용하고,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추정하며,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 추계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에 부총리의 연봉은 159,401천원, 차관의 연봉은 150,467천원으로 규정
  -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라 기본경비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연간 3,48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감 추계함
    - － 추계기간 동안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금액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기존 사무공간 및 사무용 집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업무공간 확보 및 자산취득 관련 경비는 본 추계에서 제외

[표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    | 위원장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br>위원장  | 연봉 | 159,401 |
|                   | 수당 | 18,480  |
|                   | 합계 | 177,881 |
| 시·도선거관리위원회<br>위원장 | 연봉 | 150,467 |
|                   | 수당 | 13,800  |
|                   | 합계 | 164,267 |

주: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이 포함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 2026 기준 |                  |           |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
| 구분      | 1인당<br>보수<br>(a) | 인원<br>(b) | 연간<br>총액<br>(a×b) |       |       |       |       |       |        |
| 중앙      | 178              | 1         | 178               | 189   | 194   | 200   | 206   | 212   | 1,002  |
| 시·도     | 164              | 16        | 2,628             | 2,788 | 2,872 | 2,958 | 3,047 | 3,138 | 14,804 |
| 보수 추정액  |                  |           | 2,806             | 2,977 | 3,066 | 3,158 | 3,253 | 3,351 | 15,806 |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5억 2,200만원 등 5년간 187억 4,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
| 보수                   | 2,977 | 3,066 | 3,158 | 3,253 | 3,351 | 15,806 |
| 기관부담금                | 393   | 407   | 423   | 438   | 454   | 2,115  |
| 기본경비                 | 188   | 193   | 199   | 205   | 211   | 996    |
| 공명선거추진활동비<br>(차감 소요) | (35)  | (35)  | (35)  | (35)  | (35)  | (174)  |
| 합계                   | 3,522 | 3,632 | 3,745 | 3,861 | 3,981 | 18,743 |

주 1.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기본경비는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장 비서실 인건비 등)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 각 위원장의 비서실 인력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표 6] 위원장 상임 전환에 따른 비서실 인력(안)

| 구분                        | 위원장 비서실 인력(안) |                                           |
|---------------------------|---------------|-------------------------------------------|
|                           | 현행(비상임 위원장)   | 개정안(상임 변경시)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급 1명         | 1급 1명<br>3급 1명<br>5급 2명<br>6급 1명<br>7급 1명 |
| 시·도선거관리위원회<br>(16개 위원회 합) | —             | 5급 16명<br>9급 16명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각 직급별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 명세서 상 일반직 보수를 준용함
- 기본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고, 37명의 증원 인력에 대한 자산취득비 소요를 추계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8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비서실 업무공간은 청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표 7] 비서실 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    | 현행(비상임) |             | 개정(상임) |             | 보수 추가소요<br>추정액(천원) |
|-----|----|---------|-------------|--------|-------------|--------------------|
|     | 직급 | 인원(명)   | 1인당 보수액(천원) | 인원(명)  | 1인당 보수액(천원) |                    |
| 보수  | 1급 | —       | —           | 1      | 160,954     | 160,954            |
|     | 3급 | —       | —           | 1      | 138,147     | 138,147            |
|     | 4급 | 1       | 117,733     | —      | —           | (117,733)          |
|     | 5급 | —       | —           | 18     | 86,751      | 1,561,518          |
|     | 6급 | —       | —           | 1      | 66,217      | 66,217             |
|     | 7급 | —       | —           | 1      | 50,346      | 50,346             |
|     | 9급 | —       | —           | 16     | 35,953      | 575,248            |
|     | 합계 | 1       | —           | 38     | —           | 2,434,697          |

주: 보수는 연봉(봉급)과 수당의 합계 금액이며, 수당은 1~5급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6급 이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 변경에 따른 비서실 인력 증원 관련 추가 재정소요는 2028년 32억 7,800만원 등 5년간 166억 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위원장 비서실 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
| 보수    | 2,583 | 2,660 | 2,740 | 2,822 | 2,907 | 13,713 |
| 기관부담금 | 341   | 353   | 367   | 380   | 394   | 1,835  |
| 기본경비  | 163   | 168   | 173   | 178   | 183   | 864    |
| 자산취득비 | 192   | -     | -     | -     | -     | 192    |
| 합계    | 3,278 | 3,181 | 3,280 | 3,381 | 3,484 | 16,604 |

주 1.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기본경비는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3%를 적용하여 추정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나. 상임위원 폐지(현행법 제6조 삭제)

- 상임위원 근거 규정이 삭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명과 16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16명 등 총 17명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상임위원 인건비 감소액을 추정하고,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원하기 위한 비서실 인력 3명이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관련 인건비 감소액을 추정함
- (상임위원 인건비 등) 각 상임위원의 보수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장관 및 1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여 추정하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감소액을 추정함

[표 9]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    | 위원장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br>상임위원  | 연봉 | 155,634 |
|                    | 수당 | 17,280  |
|                    | 합계 | 172,914 |
| 시·도선거관리위원회<br>상임위원 | 연봉 | 149,554 |
|                    | 수당 | 11,400  |
|                    | 합계 | 160,954 |

주: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0]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감소 인원 및 보수 감소액 추정(2026년 기준)

| 선거관리위원회 | 직급  | 감소 인원(명) | 1인당 보수액(천원) | 보수 감소액 추정(백만원) |
|---------|-----|----------|-------------|----------------|
| 중앙      | 장관급 | 1        | 172,914     | 173            |
| 시·도     | 1급  | 16       | 160,954     | 2,575          |
| 합계      |     |          |             | 2,74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 감소하고 전체 위원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비상임 위원 1명이 증가하게 되므로 월 215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지급액은 2,580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그 외, 현재 상임위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직책수행경비가 상임위원 폐지에 따라 미지급되는 경우,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245만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월 1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 지급
  - 직책수행경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상임위원 폐지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연간 지출 감소액은 2억 2,100만원으로 추정됨

[표 11]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폐지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지출 감소액 추정

| 선거관리위원회 | 직급  | 감소 인원(명, a) | 1인당 지급액 (연간,천원, b) | 연간 지급액 (백만원, a×b) |
|---------|-----|-------------|--------------------|-------------------|
| 중앙      | 장관급 | 1           | 29,400             | 29                |
| 시·도     | 1급  | 16          | 12,000             | 192               |
| 합계      |     | -           | -                  | 22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폐지에 따른 인건비 등 지출 감소액은 2028년 34억 9,500만원 등 5년간 185억 2,900만원으로 추정됨

[표 12]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폐지에 따른 인건비 등 지출 감소액 추정: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
| 보수                      | 2,916 | 3,003 | 3,093 | 3,186 | 3,281 | 15,479 |
| 기관부담금                   | 385   | 399   | 414   | 429   | 445   | 2,072  |
| 직책수행경비                  | 221   | 221   | 221   | 221   | 221   | 1,107  |
| 공명선거추진활동비<br>(지출 증가 소요) | (26)  | (26)  | (26)  | (26)  | (26)  | (129)  |
| 합계                      | 3,495 | 3,597 | 3,702 | 3,810 | 3,921 | 18,529 |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인건비 등)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인력 3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원 인력에 대한 보수 및 기관부담금 지출 감소액을 추정함

- 각 직급별 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상 일반직 보수를 준용하고, 추정 보수액에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추계
- 현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비서실 정원이 별도로 없는 점을 참고하여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표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정원 및 보수(2026년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 직급 | 정원(명) | 보수(2026년)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br>상임위원 비서실 | 4급 | 1     | 117,733   |
|                       | 6급 | 1     | 66,217    |
|                       | 9급 | 1     | 35,953    |
|                       | 합계 | 3     | 219,903   |

주: 보수는 연봉(봉급)과 수당의 합계 금액이며, 수당은 4급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6급 이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인력 감원에 따른 인건비 지출 감소액은 2028년 2억 6,400만원 등 5년간 14억 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실 감원에 따른 인건비 등 지출 감소액 추정: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
| 보수    | 233  | 240  | 248  | 255  | 263  | 1,239 |
| 기관부담금 | 31   | 32   | 33   | 34   | 36   | 166   |
| 합계    | 264  | 272  | 281  | 289  | 298  | 1,404 |

주 1. 시행일을 고려하여 2027년은 3월 이후의 재정소요를 추계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 감사위원회 운영(안 제12조의2)

#####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2명 증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

- 회의 개최 횟수는 현행과 같이 연 4회로 하고, 회의참석수당은 회당 3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40만원 등 5년간 총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5] 감사위원회 운영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
| 연간 수당지급횟수<br>(a, 2명×4회) | 8    | 8    | 8    | 8    | 8    | 40 |
| 회의참석수당(b)               | 0.3  | 0.3  | 0.3  | 0.3  | 0.3  | -  |
| 계(a×b)                  | 2.4  | 2.4  | 2.4  | 2.4  | 2.4  | 1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하고, 현 상임위원을 폐지하는 경우 등과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30억 4,3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54억 2,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
| 위원장 상임 변경<br>(안 제5조제2항) | 위원장 인건비  | 3,522  | 3,632  | 3,745  | 3,861  | 3,981  | 18,743  |
|                         | 비서실 인건비  | 3,278  | 3,181  | 3,280  | 3,381  | 3,484  | 16,604  |
|                         | 소계       | 6,800  | 6,813  | 7,025  | 7,242  | 7,465  | 35,347  |
| 상임위원 폐지<br>(현행법 제6조 삭제) | 상임위원 인건비 | 3,495  | 3,597  | 3,702  | 3,810  | 3,921  | 18,529  |
|                         | 비서실 인건비  | 264    | 272    | 281    | 289    | 298    | 1,404   |
|                         | 소계       | △3,759 | △3,869 | △3,983 | △4,099 | △4,219 | △19,933 |
| 감사위원회 운영<br>(안 제12조의2)  |          | 2.4    | 2.4    | 2.4    | 2.4    | 2.4    | 12      |
| 합 계                     |          | 3,043  | 2,946  | 3,044  | 3,145  | 3,248  | 15,426  |

주 1. 상임위원 폐지는 재정지출 감소 요인으로 차감함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전상욱 | 김안나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전상욱 | 02-6788-4673 | flyhigh@assembly.go.kr |